

## 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중국은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식량유통부문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안휘성(安徽省)과 길림성(吉林省) 등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200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안휘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1. 중국의 직불제 도입배경

우선, 중국에서 직불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연속이다.

중국 식량유통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다. 중국은 식량의 자유구매 및 판매단계(1949~52), 식량의 일괄구매, 일괄판매 단계(1953~84), 식량 구매 및 판매의 이중가격제(雙軌制) 단계(1985~97), 그리고, 1998년이후 시작된 식량유통개혁에서는 ‘3대 정책, 1대 개혁(三項政策, 一項改革)’, 즉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하고, 국유식량매매기업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하며, 농업발전은행이 비공개적으로 수매자금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의 직불제 도입은 '98개혁' 정책의 실시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이전단계의 식량유통정책을 개선한 결과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98개혁' 이후 식량정책의 운영과정에서 존재하는 내재적 모순은 중국의 직불제 실시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운영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98개혁'은 농민의 '식량판매난(賣糧難)' 문제를 비교적 적절히 해결하였지만,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재정부담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는 유통단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손실이 크고 효율성은 낮은 보조금 방식이므로, 보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조금 방식에 대한 시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한편, 기존의 국유식량시스템을 통해 식량을 구매하는 체제하에서는 국유식량시스템의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재정보조금과 국유식량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한 이후에야 국유식량기업의 자체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량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은 중국의 WTO 가입이후 국내 정책조정과 관련이 있다.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의 국내보조정책은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직접지불제는 직접적으로 감축대상보조(amber box)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보조금 대상이 농민으로 규정된 후에는 향후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조정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식량 직불제는 향후 농업세 감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직불제 개혁은 중국의 식량수급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1995~96년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최고치에 도달한 후 식량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재고량도 날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5년쯤에는 식량 수급에 '전환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식량안보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량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불제를 실

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식량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에 있다.

넷째, 안휘성의 경우, 식량 직불제 실시는 농업세계개혁과 관련이 있다. 농업세계개혁을 실시한 이후,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량 직불제는 세금부과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대략 절반가량의 농업세금을 삭감해 주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세금 징수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식량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 2. 안휘성의 직불제 실시사례

### 2.1.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안휘성의 직불제는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실시지역은 내안현(來安縣)과 천장시(天長市)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3년 5월 28일 안휘성의 성위원회(省委)와 성정부는 그해 6월 1일부터 안휘성의 전 지역으로 직불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시범실시의 주요 내용은 ‘2개 개방, 1개 조정(兩放開, 一調整)’이다. 2개 개방은 식량수매가격을 개선하여 더 이상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하지 않는다는 것과 식량매매시장을 개방하여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1개 조정은 식량보조금방식을 조정하여 기존의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단가는 식량시장가격과 정부보호가격의 차액이며, 일반적으로 식량시장가격이 정부보호가격보다 낮다. 이를 통해 국유식량매매기업의 재고와 부채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 2.2. 직불금의 지급방법

### 2.2.1. 지급방법

#### (1) 성(省)에서 현(縣)과 시(市)에 보조금 지급

각 현과 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유식량매매기업이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50kg당 소맥은 5.5 위엔(元), 중생 및 만생종 벼는 4.5위엔으로 직접지불 보조금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성(省)의 상품화식량 평균기준량은 124억근(斤)이고, 보조금 총액은 약 6억위엔이었다. 이 기간에 공급된 상품화식량의 평균량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직접지불금의 차이도 크다. 경지 면적에 따라 계산해 보면, 전체 성에서 평균 1무(畝)당 약 10위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식량상품화량이 많은 지역은 1무당 25위엔을 지급하고, 식량상품화가 적은 지역은 2.6위엔을 지급하였다. 지역별 보조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무당 보조금이 5위엔 이하의 적은 농가에는 시와 현에서 최고 5위엔 까지 보조해 주었다.

#### (2) 각 현과 시에서 농가에 보조금 지급

각 현과 시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정(査定)방식은, 첫째 농업세 부과 토지면적당, 둘째 농업세부과 고정 생산량당, 셋째 앞의 두 경우를 각 50%씩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식이다. 안휘성 식량부처의 한 관계자는 성내 현과 시의 절반이상이 세번째 방식을 선택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보조금지급방식은 각 현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성(省)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실제 보조금 지급은 향진재정소(鄉鎮財政所)에서 직접 농민에게 지급하며, 농업세 징수원칙에 따라 ‘세금징수와 보조금지급 등 두가지 사업(徵補兩條線)’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2.2.2. 보조금의 재원

안휘성은 원래 이번 직접지불 시범사업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중요한 이유는 재정상의 한계로 규모가 큰 보조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3년 국가재정부(國家財政部)는 안휘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정부에서 ‘대출’ 방식으로 안휘성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여 시범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금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도 6억위엔에 달하는 보조금 전액이 중앙 재정부에서 안휘성으로 대출되었다.

### 2.2.3. 관련 정책

이번 직접지불 시범사업에서 안휘성 정부는 정책적으로 식량부문과 식량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공동 출자한 17억위엔의 식량벤처기금(糧食風險基金)은 식량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하였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3개 관련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국유식량기업 개혁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감원조치에 대해 성(省)의 식량벤처기금을 통해 1인당 5,000위엔을 보조하였고, 보조금 총액은 3억위엔에 달하였다.

둘째는 기존의 재고량과 원가를 동결하고, 집중적으로 가격경쟁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를 완비하는 것이다. 현재 162억근의 기존 재고량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을 통해 1근당 2전(分; 0.02위엔)의 비용보조금과 2전의 판매보조금, 그리고 1.5전의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재고량의 판매로 발생한 결손(32억위엔으로 추산)은 장부상으로는 외상판매로 처리하고, 그 이자는 성의 식량벤처기금에서 지불한다.

셋째는 신규로 발생하는 식량 회계상의 외상처리된 자료를 심의, 사정(査定)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1998년 6월 1일 이후 안휘성의

재고식량 처리로 인해 증가한 외상처리액은 27억위엔에 달하였고, 기업의 손실액은 50억위엔이나 증가하여, 합계는 77억위엔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발전은행은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장부상 외상처리하는데 동의하였고, 그 이자는 성의 식량벤처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재고량 처리로 인한 손실액(32억위엔 이상으로 추산)까지 합산하면, 안휘성이 새로이 외상처리한 손실은 100억위엔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외상처리 이자보조금정책의 실시는 국유식량기업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기업이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 3. 안휘성 시범사업의 평가

안휘성 천장시와 내안현의 시범사업 상황을 보면, 소규모 개방과 전체 식량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식량 직접지불방식은 농민소득 증대와 재정부담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고, 또한 국유식량기업 개혁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이 보편적으로 실시된 후 장기적으로는 현행 시범사업은 최소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 리스크를 안고 있다.

첫째, 직접지불은 기존의 정책목표와 동떨어져 있다. 식량 직불의 목적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각 부처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도 상호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현행 개혁방안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 및 농업부처의 주도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 재정부처는 국유식량부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세 징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농업부처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이다.

둘째,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시범지역의 농가 보조금은 각 농가의 세금부과 토지면적에 따라 분배되는 것으로, 재배작물의 종류와 작물재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상대적인 식량과잉상황에서는 식량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 식량생산지의 안정적인 식량공급능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상의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셋째,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의 발생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식량 직접지불은 국유식량부문을 시장으로 편승시키는 동시에, 농민을 시장으로 몰아넣었다. 현행 식량 직접지불은 보호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기존의 보호가격수매정책과 비교해 보면 식량판매 변화상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식량시장의 주체가 역량이 부족하고 식량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식량수매주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액의 직접지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식량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는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

넷째,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 따르면, 식량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식량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보호가격(또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 따라 결정된 직접지불보조금의 일부 재정지출을 급증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식량을 수매하게 되면 또 다시 거액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금과 정부의 시장개입수매는 보호가격 수매정책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식량공급을 줄일 수 없게 되어, 지속적인 식량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다섯째, 국유식량부문의 개혁비용이 막대하다. 현행 직접지불을 실시한 후, 식량보조금은 이미 재정부처를 통해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국유식량 수매저장기업의 재정지원은 중단되게 되므로 단기간내에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설령 부채에 대해서는 외상판매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령직원' 감원에 대한 자금부담은 매우 크다. 국유식량 수매저장기업의 경영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원조치에 대해 지급되는 자금은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식량벤처기금은 농민에게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국유식량부문의 개혁을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퇴직 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재취업 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현과 시에 나타난 국유식량기업 직원들의 시위가 바로 그 전조(前兆)이다.

#### 4. 직불제 개선방향

현행 시범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정책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중국의 기본적인 식량수급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 직접지불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직접지불 보조금과 국유식량유통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또한 반드시 확실한 사고와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직접지불정책은 식량재배 농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는 앞에서 서술한 정책적인 리스크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해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 직접지불은 일반적인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발전단계와 정책수용능력을 통해서 살펴보면, 중국은 아직 모든 농민이 직접지불 보조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 직접지불은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는 일정한 식량과잉현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식량과잉상황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직접지불제도로서 식량생산을 줄이기 위한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3) 직접지불은 오직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시장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농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절대로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목표이다. 식량벤처기금에서 지급하는 직접지불의 주요 목적은 식량재배 농민의 시장 리스크를 줄여서, 식량재배 농민이 식량공급과잉이든 아니면 공급부족이든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식량생산의 상대적 안정과 중국의 장기적인 식량수급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지불정책의 대상이 반드시 식량재배 농민이어야 하고 일반 농민이 아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는 반드시 식량재배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식량공급의 상대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직접지불정책은 식량공급과잉과 식량공급부족의 두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과거의 식량공급부족상황에서 식량공급과잉과 식량공급부족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현재 구상하는 직접지불방안은 이러한 두 상황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방안은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는 식량공급을 줄이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대로 식량공급부족상황에서는 식량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직접지불은 농민을 독려하여 식량생산을 촉진하는 일방적인 장려메커니즘만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도 식량생산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단기적으로 식량생산의 공급량을 줄이는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량공급과잉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부처는 식량을 수매할 때와 과잉식량을 처리할 때 이중의 보조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그 재정비용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식량공급량을 줄이는 재정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즉 농지에 식량을 저장하는 비용이 창고에 저장하는 비용보다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셋째, 직접지불정책은 반드시 국유식량기업의 시장화 개혁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국유식량기업의 시장화개혁 전제조건은 국유식량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정책적인 책임과 경영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유식량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정책업무에 대해 확실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직접지불이 더 이상 기존의 국유식량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유식량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식량기업의 경영과는 확실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직접지불정책은 반드시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식량의 성장책임제를 실시한 후, 국가식량안보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이 되었다. 주요 식량판매지의 식량생산과 비축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도 자체적인 이익에서부터 대대적인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직접지불정책이 국유식량기업의 빠른 시장화 개혁에 따라 실시되는데, 만약 식량수매비축시장의 주체가 확립되지 못하면,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직접지불은 반드시 식량시장의 거시적 조절 주체의 형성과 거시적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원칙에 근거하여, 직접지불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접지불의 목적을 농민소득 향상과 식량안보 보장에서 식량재배 농민의 소득 안정과 식량의 수급균형 실현으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이 보조금의 대상을 일반 농가에서 식량재배 농가로 제한하고, 세금 부과 토지면적당 보조금과 세금부과 고정 생산량당 보조금을 식량재배 농가의 상품화식량 거래량에 따른 보조금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이 보조금의 지급방식은 재정부처에서 직접 각 농가에 분배지급하던 것을 각급 식량비축회사와 수매비축회사가 식량을 수매할 때 가격외 보조금의 형식으로 단독 정산하여 직접 식량거래 농가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과도한 식량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경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수리시설 개발, 경작지 정리 등 식량생산여건 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휴경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종합

안휘성의 직접지불 시범사업 사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도는 중국의 식량유통 개혁과정의 연속이고, 기존의 식량유통정책에 대한 수정작업이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농업정책조정과 전체 식량수급상황의 변화 및 농업세계 개혁의 실시 등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안휘성의 직불제는 주로 식량수매가격을 개선하여 더 이상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식량수매시장을 개방하여 경제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식량보조금방식을 조정하여 기

존의 보호가격에 따라 농가의 잉여식량을 수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직접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고, 보조금 단가는 시장가격과 정부 보호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국유식량 매매기업의 재고와 부채 등 남아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셋째, 안휘성의 직접지불사업은 농민소득 증대와 재정부담 감소, 그리고 국유식량기업의 개혁 촉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목표보다 과도하게 높은 정책 목표, 장기적이고 안정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농민의 ‘식량판매난’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 국유식량부문의 개혁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등과 같은 정책 리스크도 안고 있다.

넷째, 직접지불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직접지불에 대해 보조대상과 대상작물을 한층 더 한정할 수 있고, 세금부과 토지면적당 보조금과 세금부과 고정 생산량당 보조금을 식량생산 농가의 상품화식량 거래량에 따른 보조금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식량을 수매할 때 시험적으로 가격외 보조금을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식량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경우, 주요 식량생산지에서 수리시설 개발, 경지 정리 등의 식량생산여건 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휴경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 「동북아농업발전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길림농업대학, 2004. 8. 18)  
(曾寅初 zenyc@public3.bta.net.cn 010-6251-5300 中國人民大學 教授)